

## 1. 제정이유

자치경찰제 시행('21. 1. 1.)으로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경찰청장의 지휘·감독권이 배제되고 「범죄예방진단 절차 및 활용에 관한 규칙(경찰청 훈령 제1013호, 2121. 4. 30.)」이 폐지됨에 따라 강원도내 범죄와 사고 등의 위해 요소를 진단하고 개선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분야가 모두 참여할 수 있는 협업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, 범죄예방강화구역을 지정하고 범죄예방 전문요원을 운영하는 등 체계적인 범죄예방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임

## 2. 주요내용

- 가. 범죄예방진단 대상을 거주자·관리자 요청시설, 지자체장·주민 요청지역, 그 밖에 관서장이 진단과 개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 규정함(안 제3조)
- 나. 경찰관이 범죄예방진단을 위해 건축물이나 시설 등에 출입 시 신분증표 제시, 개인정보 수집 동의, 위험 여부 진단 후 결과를 입력하는 등 범죄예방진단 절차 및 방법에 관해 규정함(안 제4조)
- 다. 범죄예방종합계획 수립, 범죄예방 강화구역 지정, 유관기관과의 협업 등 범죄예방진단 결과 활용 방법에 관해 규정함(안 제6조)
- 라. 범죄예방진단 및 결과 분석, 유관기관·단체 협업, CPTED 활성화 등을 위해 전문요원 선발·운영하도록 함(안 제10조)

### 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#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없 음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없 음

## 범죄예방진단 절차 및 활용에 관한 규칙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범죄나 사고 등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찰관이 실시하는 범죄예방진단의 절차와 활용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범죄예방진단”이란 범죄 위험지역 또는 건축물·시설·공간 등의 물리적·사회적 환경 요인을 분석하여 범죄 취약요소를 파악하는 활동을 말한다.
2. “범죄예방디자인”이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자연적 감시·접근 통제 및 공동체 강화를 고려하여 건축물·시설·공간, 그 밖의 물건을 설계하거나 개선하는 행위를 말한다.
3. “지역경찰포털”이란 지역경찰 업무를 통합하여 업무용 모바일과 컴퓨터 등을 통해 업무 관련 서류 등을 작성하고, 관리할 수 있도록 구축된 내부망 포털사이트를 말한다.
4. “범죄예방 강화구역”이란 각종 범죄 발생의 우려가 커 특별히 강화된 범죄예방 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말한다.

제3조(범죄예방진단의 대상) 강원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(이하 “도경찰청장 등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대상에 대하여 범

죄예방을 위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범죄예방진단을 시행할 수 있다.

1. 소유자,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범죄예방진단을 요청한 건축물·시설·공간
2. 지방자치단체의 장, 지역 시민사회단체, 또는 주민 등이 범죄, 사고, 청소년 비행 등 위험 발생이 우려되어 범죄예방진단을 요청한 지역
3. 그 밖에 도경찰청장 등이 범죄·사고 발생 및 112신고 접수 현황 등을 고려하여 범죄예방진단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

제4조(범죄예방진단의 방법) ① 경찰관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범죄예방진단을 위해 건축물이나 시설 등에 출입할 때에는 상대방에게 경찰관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거나 제복을 착용하고, 진단의 취지와 이유, 진단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.

② 범죄예방진단은 범죄예방진단 카드를 작성하거나 지역경찰포털에 등록된 전자카드를 활용할 수 있다.

③ 경찰관은 제2항의 범죄예방진단 카드를 작성할 때에는 대상자에게 카드의 작성목적을 설명하고,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④ 범죄예방진단 카드에는 항목별로 위험 정도를 자세히 진단하여 진단 결과와 개선 필요사항을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.

제5조(범죄예방진단 시 고려사항) ① 경찰관은 제3조 각호의 대상에

대해 범죄예방진단을 할 때는 조명, 방범 시설과 같은 물리적 환경 요인과 노동·아동·장애인·여성·1인 가구 등 범죄 취약계층의 분포 및 외국인·유동인구 현황 등 사회적 환경 요인을 자세히 고려해야 하며, 그 지역의 112신고 건수 및 유형별 범죄 발생 건수 등 범죄 특성을 파악해 분석하여야 한다.

② 경찰관은 범죄예방진단을 할 때는 최근의 범죄 경향, 경찰의 범죄예방 노력, 범죄 발생 시 대응 요령 등을 함께 홍보하여 주민의 적극적인 협력을 유도하고 진단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.

③ 경찰관은 범죄예방진단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.

제6조(범죄예방진단 결과의 활용) ① 도경찰청장 등은 범죄예방진단 결과를 고려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.

1. 경찰관 배치 인원의 조정
2. 범죄예방대책 수립
3. 제8조에 따른 범죄예방 강화구역의 지정
4. 범죄예방디자인의 활성화를 위한 조치
5.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소유자·관리자에게 건축물·시설·공간의 개선 권고·요청
6. 그 밖에 도경찰청장 등이 범죄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

② 도경찰청장 등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요청이 있거나

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범죄예방진단 결과를 직접 또는 우편 등의 방법을 통해 서면으로 교부할 수 있다.

1. 지방자치단체의 장

2. 주민 또는 지역 사회단체

3. 건축물·시설·공간 등의 소유자, 점유자 또는 관리자

③ 범죄예방진단 결과를 교부할 경우에는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취약요인에 대한 분석과 개선 방안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.

④ 도경찰청장 등은 지역경찰포털에 등록된 범죄예방진단 결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, 위험하다고 분류된 장소나 지역에 대해 재진단을 시행하거나 특별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관리에 온 힘을 다해야 한다.

제7조(범죄예방종합계획의 수립) ① 경찰서장은 전년도 치안성과와 범죄 발생 등을 성별을 고려하여 분석하고 해당 연도 치안 수요를 예측하여 범죄취약지역 관리, 순찰 인력 활용, 방법 환경 개선, 유관기관 협업 등이 포함된 경찰서 범죄예방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도경찰청장은 각 경찰서장이 수립한 경찰서 범죄예방종합계획을 참고하여 도경찰청 범죄예방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.

③ 도경찰청장 등은 범죄예방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관기관,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제8조(범죄예방 강화구역의 지정·관리) ① 도경찰청장 등은 범죄예방

진단 분석 결과와 지역별 범죄·사고 등 위해 요인을 고려하여, 범죄예방을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관기관,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 범죄예방 강화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.

② 도경찰청장 등은 제1항에 따라 범죄예방 강화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관기관, 주민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, 건축물·시설 등의 범죄예방디자인 적용과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방범 시설설치, 순찰 활동 강화, 유관기관 협업 등 강화된 범죄예방대책을 수립하고, 유관기관·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.

③ 도경찰청장 등은 범죄예방 강화구역 지정의 필요성이 해소되었거나,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관기관, 주민 등의 해제 요청 시 존속 여부를 검토하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.

제9조(유관기관 협업) ① 도경찰청장 등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관기관 등에게 범죄예방진단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상호 교환할 수 있다.

② 도경찰청장 등은 범죄예방대책의 수립과 범죄예방디자인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야 한다.

제10조(범죄예방 전문요원 운영) ① 도경찰청장 등은 범죄예방 업무를 전문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경찰서 생활안전과 소속으로 다음 각호의 임무를 담당하는 범죄예방 전문요원을 선발·운영할 수

있다.

1. 범죄예방진단 및 결과 분석
2. 침입 범죄 등 범죄피해 시설물 진단·개선
3. 지방자치단체, 경비업체, 협업단체 등 유관기관·단체와 범죄예방 디자인 활성화를 위한 협업체계 구축
4. 범죄예방 강화구역 관리
5. 그 밖에 도경찰청장 등이 범죄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무

② 도경찰청장 등은 범죄예방디자인과 관련된 전문교육을 받은 경찰관을 범죄예방 전문요원으로 우선 선발하고, 교육기관 위탁 등 전문교육을 지속해서 실시하여 전문요원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. 전문요원을 대상으로 한 전문교육에는 범죄예방과 관련한 성인지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.

제11조(통계 관리) 범죄예방 전문요원은 지역경찰포털의 현황관리 항목을 활용하여 매월 또는 분기별로 소속 경찰관서별 범죄예방진단 현황을 관리해야 한다.

부 칙(예규 제109호, 2021. 11. 19.)

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